

전자상거래 관련 한국기업의 신지식재산권 보호방안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E-commerce

이승영(Seung-Young Lee)

동국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 교수

조명자(Myung-Ja Cho)

동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과정수료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신지식 재산권의 의의 및 보호 | 참고문헌 |
| III. 신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와 시사점 | Abstract |
| IV. 기업의 신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 |

Abstract

As digital economy has dramatically evolved,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has emerged as a pivotal issue which companies need to actively respond to. At the new digital era, the possess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etermines the company values, and thus the prote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getting more importance in the dimension of global competitiveness. The paper analyzes the changing aspect of digital economy and e-commerce paradigm, and explores the protection pla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cusing on e-commerce and digital goods transaction so that it can help the companies to strengthen their global competitiveness. After various case studies, we can find out that even though the companies have difficulty in settling out the strategies and policy due to the radical change of cycle in internet-centered digital economy, companies need to establish the systemic strategic plan to protect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age by stage. Also, appropriate legal, institutional basis to protect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hould be rearranged.

The unsolved problems which relates with the protection of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ll be left for next research project.

Key Words :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digital era, e-commerce, protection plan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오늘날은 정보자원의 상품화를 비롯한 디지털 문화 콘텐츠 상품의 생산·유통 및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거래당사자들이 상품의 가치 보전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 그리하여 상거래 패러다임의 획기적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경제 주체들로 하여금 변화에 부합되는 준비와 능동적 자세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무한 경쟁의 지식 경영 환경 속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부분으로서 핵심적인 관심사이다. 지적재산권은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조를 위해 사회적인 유인제도와 창조된 지식의 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 제도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며, 해당 산업과 발명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영자원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무단 도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제도의 강화는 도리어 기술혁신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산업의 지배구도를 바꿔 놓을 수 있는 최고의 키워드인 신지식재산권의 소유는 기업의 가치 보전과 관련된 문제로서,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그의 보호 대책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2. 연구의 목적 및 방법

기업의 가치 보전을 위한 지식기반 경제사회(knowledge based economic society)에서는 6T산업¹⁾들이 미래의 성장을 주도할 것인 바, 기업들로서는 향후 신지식재산권으로 불리는 이들 분야를 중요한 기업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의 논문은 신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기업들로 하여금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세부적 목표로는 첫째, 기존 지적 재산권 제도의 패러다임 변화를 신지식재산권 제도와 연결시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둘째, 전자상거래의 새로운 방향 전환에 따른 기업의 신지식재산권 보호 대응방안을 모색하며, 셋째, 향후 변화에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영지도적 성격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로 한다.

1) IT산업(정보통신기술산업, information technology), BT산업(생명공학기술산업, biotechnology), NT산업(극미세기술산업, nano technology), ET산업(환경기술산업, environ-mental technology), ST산업 (우주항공기술산업, space technology), CT산업 (문화콘텐츠기술산업, culture technology)등.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의 방법으로 신지식재산권 관련 각종 정책 자료와 연구 및 학술 문헌 자료를 수집한 후 이를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is) 방법으로 수행한다. 그리고 학술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업의 신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제시하며, 신지식 재산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 상거래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여타 신기술 분야를 포함하기로 한다.

II. 신지식 재산권의 의의 및 보호

1. 신지식 재산권 의의 및 유형

1) 신지식 재산권의 의의

지적재산권²⁾은 본래 인간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와 표지에 관한 권리를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관련 창작물에 대한 보호문제와 자료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게 되었으나,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아직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다만,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창작물로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2) 신지식재산권의 유형 및 국내외 정책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의 기여를 보호의 본질로 하는 것에 비해, 저작권은 산업영역이 아닌 문화영역에서의 정신적 기여를 보호의 본질로 하고 있다.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은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과 산업저작권의 복합적인 창작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의 측면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용도는 산업재산권과 같이 산업적 활용이 주요 기능인 신기술 분야의 지적생산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첨단지적재산권은 유전공학, 전자 및 정보산업 등 분야로 과거의 산업재산권에서 논의되던 것과는 구별되는 매우 다른 성질의 물질과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정보재산권은 상품의 제조, 판매, 영업 및 기획 등의 분야에서 상품화될 수 있는 정보와 이의 전달수단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2) WTO설립협약 제2조 제8항(지식재산권의 범위)

① 문학,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② 연출, 예술가의 음반 및 방송 ③ 인간노력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④ 과학적 발명 ⑤ 산업 디자인 ⑥ 등록상표, 서비스마크, 상호 및 기타 명칭 ⑦ 부정경쟁방지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로 구성. 이들 권리는 모두 모방 내지 무임승차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고 동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일반 재산에 비해 정신적 노력이 투입된 재산으로 인격적 이익보호가 강조되는 권리임과 동시에 현실적으로 자유시장경제에 있어 독점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독점규제 정책과의 조화가 문제로 되고 있다.

<표 2-1> 지적재산권의 유형

산업재산권	특 허 권	기술적 창작인 원천·핵심 기술 (대발명)	• 지적 창작에 대한 권리(기술적 창작, 공업상 미적 창작)
	실 용 신 안 권	Life-cycle이 짧고 실용적인 주변개량기술(소발명)	
	의 장 권	심미감을 주는 물품의 형상·모양	
	상 표 권	기호·문자·도형	• 영업표지에 대한 권리
저 작 권	저 작 재 산 권	학문·예술에 관한 정신적 창작)	• 지적 창작에 대한 권리
	저 작 인 접 권	실연가, 음반 제작가, 방송사업자 권리	
신 지 식 재 산 권	첨단산업재산권	반도체 배치설계, 생명공학, 인공지능.	• 지적 창작에 대한 권리
	산업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정보 재산권	영업비밀, 데이터베이스, 뉴미디어	
	신 상표권 / 의장권 등	캐릭터, Trade dress, 프랜차이징, 퍼블리시티권, 지리적표시, 인터넷도메인네임 새로운상표(색채상표, 입체상표, 소리, 냄새상표 등)	

자료 : 전상우, “유형별 지식재산권체도의 비교연구”, 특허청 수요아카데미 발표자료, 2003. 11, p.9. 재작성

특히 신지식재산권 중 반도체 산업분야는 우리나라가 세계 제2, 제3위의 생산국으로 부상하게 됨에 따라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에 대한 보호 및 기술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배치설계권은 <표 2-2>와 같이 특허권과 저작권의 중간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외국에서는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이라고도 부른다. 신지식 재산권 중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따른 기존법과의 비교는 다음과 같다.

<표 2-2>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과 기존법과의 비교

구분	특허법	저작권법	동법	비고
목적	• 발명의 보호 및 이용도모, 기술발전의 촉진 • 산업발전	• 저작자의 권리 보호 • 문화의 향상발전	• 배치설계 창작자의 권리보호 • 반도체 관련산업과 기술의 진흥	• 산업발전과 관련 (특허권적 성격)
보호 대상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	• 문학, 학술 또는 예술적 창작물 • 아이디어의 표현	• IC를 제조하기 위한 각종 회로 소자 및 연결도선의 배치설계	• 설계도면의 일종 (저작권적 성격)
권리	• 실시권	• 저작권인격권	• 이용권	• 보호범위의 확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의 발명 - 방법의 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치설계 - 배치설계에 의해 제조된 IC - IC 내장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 (특허권적 성격)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실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무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방식심사)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체심사후 등록 - 신규성, 진보성 - 산업상 이용성 • 권리발생 요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심사주의 • 등록은 제3자에의 대항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식 심사후 등록 • 창작성은 무심사 • 권리발생 요건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성 여부의무심사 (저작권적 성격) • 등록(특허권적 성격)
존속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원일부터 2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작권재산권은 생존기간 및 사망 후 50년 • 저작권격권은 저작자 일신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정 등록일부터 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점 배타적 기간의 제한(특허권적 성격)

자료 : <http://law.daum.net> , 이범호, “신지식 재산권 안내서”, 전기전자심사국, 2005. 8, p28, 인용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 협약으로는 미생물분야를 비롯한 생명공학 기술 분야의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부다페스트조약(Budapest Agreement)과 반도체 집적 회로의 회로 배치 설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체결된 워싱턴조약(Washington Agreement) 등이 있다.

WIPO는 1988년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발전(New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제목에서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위성·케이블 방송, 생명공학 등을 다루었다. 지식재산권의 기술적·법적 발전(Techno-logical and Legal Development in Intellectual Property)이라는 내용에는 디지털 시대의 배포권 문제와 신지식재산에 대한 법률적 보완방안 등을 간단히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신지식 재산은 ① 과학·기술 발달로 인한 확대 ② 상표·의장의 보호대상 확대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는 현재 제도적으로 보호가 논의되고 있는 것도 있다.

2. 신지식재산권의 보호

1) 신지식재산권 보호의 이론적 검토

근대적 의미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확립된 19C 중엽 이전부터, 500년을 넘어서는 지적재산권의 관련 법을 통해 21C 지구촌은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을 접고, 지식기반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³⁾.

21C 지식기반경제사회에서는 뉴 파워 엘리트(new power elite)라 할 수 있는 디제라티(Digerati)⁴⁾와 테

3) 홍창선, “지재권 보호제도는 국가경쟁력의 바탕”, 한국지적재산권 법제연구원, 2005.4.

4) Digerati란 Digital과 Literati의 합성어로 테크노 파워시대의 뉴 파워 엘리트인 신지식인을 말한다.

크노크라트(technocrat), 테크노 CEO (techno Chief Executive Officer) 등이 이끄는 테크노 파워(techno power) 시대이다. 테크노 파워 시대에는 지적재산권이 중요한 산업 자본재로 인정받으면서 기업의 메가트렌드(mega trend)를 형성함으로써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제 무역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의 출원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⁵⁾.

지적재산권은 지식 기반 경제사회에서 산업의 지배 구도를 바꾼 최고의 키워드가 되고, 기업의 부에 대한 가치는 지적재산권의 소유 여부와 지적재산권의 출원을 위한 연구개발비의 투자에 달려 있게 된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R&D(Research & Development) 개념도 향후에는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개념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신지식재산권의 분야에서의 생명공학은 식물이나 동물의 경우에 특허법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으며, 최근 관심거리로 부상한 동물복제와 관련해서는 DNA 관련 유전자사업, 게놈 프로젝트(Genome Project)라는 것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국가에서는 생명공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서 전세계 각국이 이와 관련하여 종교, 윤리, 철학, 법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논의 중에 있다.

2) 신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

신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은 급격한 기술 변화 시대에 의한 것으로, 그 핵심은 정보기술(IT)의 이 동통로로서 인터넷의 보급이 될 것이다.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 그것을 저작권으로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재산권으로 보호할 것인지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 여부와 의 장·상표의 경우도 입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 장 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이 새로운 문제로서 등장하였으며, 지식기반 경제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6대 국가전략산업은 6T산업으로, 지식기반 경제사회로 인한 고도의 기술 융합으로 인해 신지식재산권의 출원이 크게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부의 가치는 과거 제품생산에 비해 월등히 높으므로,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 사이버 공간에서의 상표권, 소프트웨어의 특허권, 영업비밀권 보호, 6T 산업, 분쟁의 관할 및 준거법 적용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의 기업들은 초고속 인터넷의 확산으로 수많은 기회를 찾아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아 나서기에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겠다.

5) 특허청,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 전국 순회 지식재산권 설명회,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037-14.

3) 신지식 재산권의 보호 방법론

(1) 내용물에 대한 보호

소위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문제와 오프라인에서의 도메인 네임(domain name) 등록자를 상대로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에 따라 도메인 네임 분쟁이 급속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e-비즈니스를 둘러싼 지적재산권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① 저작권법과의 관계

전 세계적인 저작물 시장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오프라인에서 CD 등의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를 대체하여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음악이 P2P(Peer to Peer)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 소비가 증가 추세이다.

음악 저작물이 MP3 파일의 형태로 변환되고, 영상 저작물이 인터넷 방송이나 게임, DVD 등을 이용, 수익 극대화를 위한 2차적 저작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음에 따라 저작물 보호와 기술보호 장치까지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도록 저작권 집중관리 단체가 더욱 필요하게 된다. 현행법상 '저작권 위탁 관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들 저작권 위탁관리 단체는 외국의 경우 저작자를 위해 이용자와 집합적 이용계약(collective licensing)을 체결하고, 모든 저작권 이용 계약을 완료할 수 있는 원 스톱 쇼핑(one-stop-shop)의 기능을 제공하여, e-비즈니스의 양적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②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

편집물 제작자 보호규정을 신설, 편집물의 제작 또는 유지 관리를 위하여 인적,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에게 복제, 배포, 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도록 하고 있다. 현재의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발전법'을 중심으로 우리의 e-비즈니스 환경에 맞는 보호 방법론을 찾아 다듬고 운영하는 것이다.

③ 특허법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 보호

인터넷에서 e-비즈니스를 위한 새로운 판매나 경매방식, 광고, 게임 조사, 교육 방식 등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나 영업 방식을 특허로써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우리의 특허청은 이미 미국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추세를 고려,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에 관한 심사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내 e-비즈니스 환경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심층적으로 고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허 적격 여부를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 도메인 네임의 보호(형식)

도메인 네임이 사업자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적 기능을 인터넷을 통해 수행할 수 있음에도 등록 절차는 상표 등록과는 무관하게 도메인 네임 등록 대행기관에 의해 등록된 나라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네임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오프라인의 상표권자와 도메인네임 선등록자 사이의 갈등은 불가피하게 된다. 다만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간기구인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International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에 의해 승인을 받은 국내외 분쟁해결기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양쪽 사이에서 동의할 경우 강제 분쟁 해결 절차로 신속히 처리되지만, 결정에 불복할 경우 사법적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3) 기타 서비스의 보호

통화 시 신호음 대신 음악이 나오는 전화 연결음 서비스는 사용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신지식재산권 분쟁사례로 대두하고 있다.

전화 연결음 서비스 요금의 2/3를 수익으로 가져가는 이동통신업체는 CP(contents provider)들의 시장 확대 목적을 비난하면서 저작권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3. 신지식재산권 보호의 쟁점

1) 사이버 공간의 자유와 규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원리나 비즈니스 모델(business model)자체가 과거와는 전혀 다르며, 경제주체들의 의식 또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리하여 필터링이나 IP주소 추적기술은 사이버 공간을 규제하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IPv6 기술이라는 새로운 방법이 각 컴퓨터가 ISP(internet service provider)들이 접속할 때마다 모든 하드웨어에 고정 IP주소를 부여함으로써 데이터가 송신될 때마다 사용자의 전자지문을 따라다니게 할 수 있다. 현재 IPv4 기술에서는 IP를 부여하는 유동IP에 의존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의 익명성이 보호되며, IPv6기술 하에서는 IP주소를 무한대로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P2P를 이용한 데이터의 복제는 전 세계에 확산되는 가장 자유로운 기술로서, 이에 대한 규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2) 보호와 공유

(1) 카피레프트6)의 생성

생성의 기원이 1960년대 히피문화나 사회주의에서 찾을 수 있는 카피레프트를 최초로 보고한 보고서가 GNU(Gnu's Not Unix)이다. 본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따로 보호받고 있다. 그에 의하면 카피레프트란 CN(Copyright Notice) 및 GPL(General Public License)의 결합으로 구성되며, GNU에 의해 제시된 FSF(Free Software Foundation)⁷⁾ 방식으로 프로그래머들의 창조적 능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2) 카피레프트의 목적과 비판

카피레프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정보의 공유에 있으며, 인터넷의 유용성은 정보의 공유와 나눔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의미할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의 창출이다.

재산권보호의 한계에 관해 국제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의 침해사례로서 책을 복사하거나 제본하는 예와 네티즌들이 통신과 인터넷을 통해서 MP3⁸⁾나 음악파일을 다운받고, 가짜 상품이 만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3) 인터넷 공유 사이트

일명 야동(야한 동영상), 디아블로2, 킹덤 언더파이어 등과 같은 불법 게임소프트웨어는 물론 일본 애니메이션, 유명 가수들의 MP3 파일, 개봉관 극장에서 상영 중인 영화들도 공유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와레즈 때문에 국내 매출이 외국 판매의 10분의 1 정도에 그쳐 국내 시장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⁹⁾

이러한 와레즈는 서로 연결되면서 그 사이트 수가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특히 한국에서 발달해 있으며. 이곳에는 소프트웨어, MP3 파일, 애니메이션, 영화, 성인물과 관련된 자료들이 연결되어 있다.

6) 디지털 상품의 복제행위를 규제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카피라이트(저작권)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라면, 카피레프트는 저작권의 독점적 보호를 철폐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이때의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演述),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7) FSF란 기업과 사용자의 기금으로 재단을 만들어 프로그래머들에게 보상하는 제도이다.

8) MP3란 압축비가 12:1인 오디오 코덱의 한 형태로, 일반 웨이브 파일에 비해 크기가 10분의 1이면서 CD 수준의 음질(16bits, 44.1kHz)을 구현할 수 있는 오디오 파일 포맷이다. MPEG 오디오는 압축비에 따라 계층 1은 4:1, 계층 2는 8:1, 계층 3은 12:1로 나누고 있다.

9) 동아일보, 2001. 3. 12.

Ⅲ. 신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와 시사점

1. 신지식재산권의 분쟁 사례

1) 정보재산권의 영업 비밀 침해 금지 행위¹⁰⁾

(1) 모나미 사건

필기구 제조업체의 잉크제조 관련 기술정보가 부정 경쟁 방지법 소정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① 사건 개요

(주)모나미와 M사 두 업체는 국내 문구업체의 대표기업으로 '93년 1월 (주)모나미의 제품연구소 실장으로 근무하던 이모씨가 경쟁사인 M사로 직장을 옮기면서 분쟁이 비롯되었다.

모나미 측은 이모씨가 모나미에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볼펜, 사무용 폴 등 48개 제품의 원료배합비율 등 기술관련 자료가 적힌 노트를 가져가 경쟁사에 제공함으로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93. 2월 서울민사지법 남부지원에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다.

② 판결요지

[가] 필기구 제조업체에서는 잉크 제조의 원료로 10여개의 화학약품의 종류, 제품 및 색깔에 따른 약품들의 조성 비율과 조성 방법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서 짧게는 2년, 길게는 32년의 시간과 많은 인적, 물적 시설을 투입하여 연구·개발한 것이고, 생산 제품 중의 90% 이상의 제품에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그 기술 정보 보유업체의 영업의 핵심적 요소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다. 당해 업체의 직원들조차 그 내용을 알기 곤란하여 비밀성이 있고, 공장 내에는 별도의 연구소를 설치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그 곳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한편 모든 직원들에게는 그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연구소장을 총책임자로 정하여 그 기술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으로 비밀관리 했다면, 그 기술정보는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나] 필기구 제조업체의 연구실장으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술정보를 습득한 자가 계약관계 및 신의성실의 원칙상 퇴사 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타 회사로부터 고액의 급여와 상위의 직위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였으며, 회사에서 그 기술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사용하여 잉크를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경우, 그러한 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이념에 비추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그 연구실장을

10)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스카우트한 회사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다]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고용되어 영업 비밀을 취득한 자가 그 영업 비밀을 자신의 노트에 기재한 행위 자체는 영업 비밀의 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타 회사에 스카우트되어 그 노트에 기재하여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노트는 부정 경쟁방지법 제10조 제2항 소정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에 해당하고, 영업 비밀 침해 행위가 계속될 수 있다면 그 노트에 대한 폐기를 명할 수 있다.

2) 인터넷 도메인 네임

(1) 샤넬 사건¹¹⁾

도메인 등록자가 웹 사이트에서 상표권자와 동일·유사한 영업을 하는 경우로 상표권자가 승소한 사례

① 사건 개요

저명한 샤넬(chanel)이라는 상호 또는 상표를 프랑스의 샤넬사와 무관한 피고가 「chanel.co.kr」이라는 인터넷 도메인 네임을 등록한 다음 그 홈페이지 여러 곳에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를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의 웹 사이트에는 각종 성 관련 제품과 란제리들이 목록을 게시하여 이를 판매하였는데, 특히 ‘페르몬향수’의 광고에는 ‘프랑스 직수입품’이라고 표시하여, 전자거래에서 취급된 사건이다. 이에 원고들은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을 들어 부정 경쟁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으로서 피고의 도메인 네임의 등록 말소를 청구하였다.

② 판결 요지

법원은 피고의 영업 행위가 원고 샤넬의 영업 사이에 부정 경쟁방지법의 타인의 영업 표지가 갖는 저명성에 편승하여 수요자를 유인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고자하는 영업 주체의 혼동으로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였고, 도메인 네임의 등록에 있어서 선 등록 우선주의는 한국 인터넷정보센터의 방침 또는 지침에 불과한 것으로 그에 따른 도메인 네임 등록이 부정 경쟁방지법 등의 일반 법률 질서에 위반한 경우까지 적법하게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은 대다수의 경우 도메인 네임이 광고나 선전 등의 목적상 자신의 영업이나 상표를 표장하는 영문철자로 이루어져 있고, 기업의 경우에 우리나라의 국가코드인 “.kr”로 끝나는 도메인을 등록함에 있어서 2단계 도메인으로 “.co”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므로, 한국에서의 원고 샤넬 또는 그 영업과 관련이 있는 기업의 홈페이지를 찾으려는 일반인으로서의 원고의 샤넬의 상호나 상표의 영문철자를 그대로 사용한 이 사건은 도메인 네임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이를 통해 피고의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11) 1999.9.17.99가합41812판결(서울지법민사12부)

된다는 점과 피고의 홈페이지에는 “Chanel International” 또는 “샤넬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호나 표시가 곳곳에 사용되었고, 계시된 상품 목록도 원고 샤넬이 상표 등록하고 제조 판매하는 상품인 향수나 여성용 속옷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페르몬 향수 및 란제리를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일반인으로서의 피고의 영업 행위가 원고 샤넬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과 같은 혼동을 가져오게 됨으로써 부정 경쟁 행위 및 상표 및 서비스 표를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선정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상호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샤넬 판결의 핵심은 “chanel.co.kr”이 프랑스 샤넬과의 혼동 여부였기 때문에 ‘혼동할 확률’에 대한 판단으로 광의의 혼동을 적용하여 넓게 해석하기보다는 도메인 네임과 홈페이지 내용의 불일치 경향이 높은 가상공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피고의 도메인 네임을 등록 말소하지 않는다면 피고가 용이하게 홈페이지의 내용을 변경하고 앞으로 다시 원고와 동일한 상표로써 부정 경쟁 행위를 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피고에게 도메인 네임 등록 말소청구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므로 부정 경쟁 행위로서의 영업 주체의 혼동에 대한 판례는 앞으로 혼동의 위험이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여 넓게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mastercard.co.kr 사례¹²⁾와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³⁾

(2) 도메인 국제분쟁 사례

최근 business.com이 750만\$로 거래되는 등 도메인 네임의 재산적 가치가 증대함에 따라 국가별 상표 등록과 동시에 전 세계적인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병행하는 도메인 네임이 상표와 더불어 이미 기업에서 인터넷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무형자산 또는 신지식재산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세계 지적 재산권 협회 제소 사례

도메인은 먼저 등록한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때문에 저명한 기업이나 상표에 관련된 도메인을 전매 목적으로 무단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이 횡행하고 있어 세계지적재산권 협회(WIPO)는 1999년말 「도메인분쟁 중재센터」를 설립, 분쟁을 해결해오고 있다. 분쟁대상은 ‘.com’ ‘.org’ ‘.net’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도메인 주소이다.

인터넷 상의 주소인 「도메인」을 둘러싼 분쟁처리에 있어서, WIPO(세계지적재산권협회)는 2006년의 경우, 도메인분쟁이 전년대비 25%가 증가한 1823건이며, 1999년 12월의 분쟁처리제도 도입부터 2006년 말까지 누계 1만 177건에 이르고 분쟁 가운데 97%인 9,389건은 WIPO의 중재나 당사자 간의 화해로 해결하고, 해결된 분쟁 가운데 해당 기업에게 도메인이 양도된 경우가 84%이며, 나머지도 다른 방법에 의해 합의되었다고 한다.

WIPO의 중재 결과에서 한국은 국제 인터넷 도메인 분쟁에서 거의 참패를 당하는 실정이고,¹⁴⁾ 패소

12) 서울지방법원 2000. 9. 8. 선고 2000가합6471 판결

13) 원낙연, 전계논문, pp131- 132.

이유와 내용은 도메인 주소를 선점한 뒤 상대방 회사에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지만 유명회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을 선점한 행위도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¹⁴⁾ 판결 요지는 일본 소니 사의 이름을 딴 도메인 소니뱅크닷컴(www.sonybank.com)을 선점했던 이모씨(34)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중재 조정센터의 도메인 이전결정에 불복해 소니 사를 상대로 낸 ‘도메인 이름이전 결정 취소 및 소유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결정한 것이다. 특히, 도메인등록 후 5일 이내의 취소 시 등록비용이 면제되는 제도를 악용하여, 대량의 도메인을 등록, 웹상에 광고하고, 그 반응에 따라 선호 도메인을 남긴 후 취소하는 「도메인 테스트링」수법으로, 현재 수천만개의 도메인이 일시적으로 잠겨되고 있다.

〈표 3-1〉 한국관련 주요 도메인 분쟁 중재 결과

(2000년 4월 현재)

제소된 도메인 주소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결정내용	결정 이유
worldcup2002.com 등 월드컵 관련 도메인 15개	FIFA	한국인 정모씨 등	이전명령 (transferred)	부정목적 (bad faith)
toeic.net	ETS(미국 영어시험 기관)	Netkorea	"	"
toefl.net	"	"	"	"
sgs.net 등 2개	스위스 SGS사	Inspectorate Korea	"	"
flammarion.com	프랑스 회사	한국 이모씨	"	"
maersksealand.com 등 2개	덴마크 회사	한국 대전의 웹 회사	"	"
ikea-korea.com	네덜란드 회사	Evezen Korea	"	"
ikeakorea.com	"	한국 허모씨	"	"
monsantopharmacia.com 등 2개	스웨덴 회사	한국 개인회사	"	"
bancodobrasil.com	브라질 회사	"	"	"
mymp3.com	미국 MP3.com사	한국 샌더스	청구기각(denied)	
choyongpil.com	가수 조용필	한국 개인회사	이전명령	부정목적

자료 : <http://www.wipo.org> 인용

14) 2000년 12월 말까지 판결이 난 분쟁가운데 한국관련 사건 12건의 결정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10건에서 패소하여 도메인을 해당 외국기업에 빼앗겼다. 나머지 2건 가운데 1건은 청구기각이었으며 1건은 원고(가수 조용필)와 피고(1사)가 모두 한국인이거나 한국기업인 사건이다. 결국 순수하게 한국이 이긴 사건은 1건에 불과하며, 2004년 피신청건수 357건에 비해 제소한 건수는 33건에 불과하여 국제 도메인 분쟁에서 제소만 당한 셈이다.

15) 2002. 10. 24,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12부(장상익(張相翼) 부장판사) 판결

② 상표 분쟁과 도메인 네임 분쟁의 차이

국제적인 인터넷 주소관리기구(ICANN), 세계지적재산권 기구(WIPO)등의 규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미국의 InterNIC 및 우리나라 KrNIC 등 도메인 네임의 등록을 관장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기관들은 도메인 네임의 소유권 분쟁이나 타기관의 상호·상표권·저작권을 침해로 분쟁이 발생되면, 관할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당사자간 합의서 또는 법원의 판결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나,¹⁶⁾ 인터넷의 초국가적이고 시공을 초월한 특성으로 인해 관할법원, 적용법 등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저작권 : 음반 업계와 인터넷 무료 음악 파일 서비스인 P2P¹⁷⁾ 모델과 분쟁

P2P라는 새로운 기술 환경에 대한 기존의 음반시장의 대응은 첫 번째, 법적인 대응으로 미국에서의 냅스터 및 한국에서의 소리바다가 대표적이다. 음악분야에서 저작권과의 가장 큰 분쟁이 2000년 냅스터 사가 자사의 중앙서버에서 개인소유의 파일을 온라인 공유를 위해 공개하였다는 이유로 2000년 저작권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이다. 2001년 소리바다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됨으로써, P2P 방식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야기되었다. 이는 음반업계와 인터넷 음악 사이트 간의 무료 음악 파일 서비스에 대한 것으로 2005년 5월 소리바다를 시작으로 버스, 나우 등 음악 파일을 공짜로 제공하는 인터넷 음악 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해 네티즌들이 음반을 구입하는 대신 파일을 다운받아 음악을 감상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최근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제품 및 서비스의 등장이다. 세 번째는 경제적 대응으로 새로운 환경에 맞게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는 것으로 최근 세계 메이저 음반사들이 온라인 음악시장에 활발히 참여하여 상황에 맞게 여러 방법을 취합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1) 소리바다 사례¹⁸⁾

① 사건개요

스트리밍 기술을 기반으로 한 무료 온라인 음악 사이트 벅스 뮤직과 P2P기술을 기반으로 한 파일 공유사이트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자신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있는 파일을 상호간 직접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 방식이다. 소리바다가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P2P 방식에 대한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에 대해 음반산업 협회와 온라인상의 네티즌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법률적 논쟁이 야기되었다.

이 경우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MP3음반 파일을 전송하고 받은 회원들이며, 소리바다는 인터넷 사

16) 이범호, “신지식재산권 안내서”, 전기전자심사국, 2005. 08.

17) P2P(Peer to Peer)는 PC와 PC를 직접 연결하여 디지털 파일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18) 2003가합857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합의1부,2003.10.24.

용자끼리 서로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MP3파일을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서버에 음악 목록과 회원 ID 등을 저장한 뒤 다른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냅스터와는 달리 음악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네티즌간에 서로 연결만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② 판결의 요지

2003년 10월 24일 소리바다 사례는 인터넷 서비스 책임자로서 법원은 음반의 무단 복제·배포를 목적으로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미 소리바다 프로그램 개발 이전에도 냅스터 소송은 진행되어 왔으며, 소리바다 개설 이후에도 음반판매가 줄지 않은 점을 들어 저작권 침해 논란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저작 인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¹⁹⁾ 형사법원은 소리바다 서비스가 저작권침해의 방조행위가 아니므로 무죄라는 판결을 2005년 내린바 있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²⁰⁾

③ 냅스터 사례와의 비교

P2P(Peer To Peer) 서비스공유 사이트인 미국의 ‘냅스터’와 국내 ‘소리바다’는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로서 사용자들이 다른 사용자의 자원을 이용하고 자신의 자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정보제공자와 정보사용자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양방향성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냅스터와 소리바다 등 MP3파일의 저작권 침해 관련 판결의 가장 큰 특성은 판결 그 자체의 내용에 있다기보다는 판결이 사회적, 산업적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재판에서의 냅스터의 패배가 P2P기술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²¹⁾

<표 3-2> 냅스터와 소리바다의 판결요지

침해여부	냅스터	소리바다
ISPs의 저작권 직접침해	다루지 않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
이용자의 직접침해	침해가 인정됨	침해가 인정됨
ISPs의 간접침해	기여·대위 책임 인정	손해배상 책임인정

자료 : 김병조, “MP3파일의 법적규제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2004, P67

19) 수원 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6.25자 2002카 합208가처분결정, 서울지방법원2003. 9. 30.자 2003카합 2151가처분 결정, 서울지방법원 2005. 1. 27.선고 2003rhkes6560,7900(병합), 10274(병합), 2004고단1275(병합), 4133(병합), 5829(병합), 당시 저작권법에는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후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전송권 조항을 신설하는 계기가 되었다.(박준석, 2006).

20) 서울 지방법원 2003. 5.15.선고 2001고단 8336 판결(저작권법위반 방조),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5.1. 12.선고 2003노4296 판결, 대법원2007. 12. 14. 2.5도872 판결을 참조.

21) 우지숙. 2003

소리 바다 운영서버의 사용 중지 결정이 내려진 이후 소리바다를 대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성행 하여, 법률의 규제를 피해 ‘소리바다’2, ‘소리바다’3, ‘소리바다’4, ‘소리바다’5, 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그때마다 음반업계의 소송이 뒤따르고 있다. 선 패닝의 냅스터(Napster)라는 음악파일 전송 프로그램은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에 의해 사이트 폐쇄와 소송을 당하였지만 이러한 소송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보공유 커뮤니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이름이 데렉 PLA인 16세의 고교생은 이른바 냅스터와 유사한 기능의 VBGNU텔라(VBGNUtell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에 올렸다.²²⁾

④ 저작권 보호문제 주요 쟁점

2006년 12월 개정되어 2007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은 인터넷상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들로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P2P사이트나 웹하드 등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에게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를 돕기 위한 조항이 있다. 음악, 영화, 책, 소프트웨어 등의 파일을 공유하는 ‘P2P 기술’, ‘뉴텔라(Gnutella)’, ‘프리넷(Freenet)’과 같은 중간매개자를 거치지 않는 ‘P2P 기술’은 전자우편이나 웹처럼 보편적인 인터넷 기술 표준의 하나이다. 특히 ‘프리넷’은 정보의 출처와 소비자의 익명을 보장하고 있으며, 개발자인 영국의 프로그래머 이안 클라크는 ‘지적재산권의 폐지’를 주장한다.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워터 마킹기술은 디지털 정보가 원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강력한 기술로써, MP3을 비롯한 디지털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권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디지털 저작물이 어떠한 유통경로를 통하는지를 추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워터 마킹된 이미지들을 복제해 간 모든 사람들의 위치를 전부 파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개인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 할 것이며, 허용 가능한 복제 (혹은 디스플레이) 횟수를 제한할 수 있고, 인접권 기술 등 다양한 복제 방지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어 사실상 가장 파괴적인 저작권 보호 기술인 것이다. 비상업적인 용도의 음악 창작물에 대한 복사, 배포 권한을 인정하는 Copyleft정신은 정보공유와 창작자에 대한 보상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정신이기에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²³⁾

2. 신지식재산권 분쟁 사례의 시사점

신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며, 궁극적으로 기술 유출 및 정보력 변화를 유도하여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사례들에서의 시사점을 경영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지식재산권 패러다임 변화에의 적응을 끈관하게 하며, 둘째, 라이프 사이클 단축으로 인해 신지식재산권의 실체를 파악하기 곤란하고, 셋째, 디지털 상품의 출현으로 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한다. 넷째, 예측불허의 분쟁 해결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

22) <http://www.ipleft.or.kr/data/ma12.html>

23) <http://www.ipleft.or.kr/data/ma12.html>

고, 다섯째, 디지털 상품들의 유료화의 급진전과 여섯째, 법률적 제도 장치가 마련되는 과정은 시차가 발생하여, 효율적인 규율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서비스 산업이나 무역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는 일은 곧 디지털 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일맥 상통하는 일이며, 국가 장래를 밝히는 지름길이 된다. 특히 서비스 산업의 3차 산품에 해당하는 무형상품은 디지털 상품으로 변신하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기에 가장 용이하다.

특히 소프트웨어는 디지털 상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부가 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대안이 되며, 네트워크는 디지털 상품 거래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통로이다. 그리고 콘텐츠산업은 DB산업, SW산업, 정보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IT 신산업으로 지칭된다. 이 분야의 세계시장은 매년 평균 33.8%의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디지털 상품에서 경쟁력을 선점하려는 노력은 곧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IV. 기업의 신지식재산권 보호 방안

1. 기업 경영 부문

1) 문제 인식 및 제도의 정비

기업의 입장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기업이 연구개발한 지적창작물에 대해 보호를 받음으로써 시장에서 누릴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이로써 경쟁업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보호받는 분야에 대한 경쟁자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예기치 못한 손실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기업은 신지식 재산권 분야의 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하여 정보의 활용측면, 전략적 측면 등에서 방안을 필요로 한다.

(1) 신지식재산권 정보의 체계적 활용

기업이 신기술 또는 신제품을 개발할 시점에서 관련 정보를 충분히 조사한다면 재산권 보호 가능성, 이중 투자의 방지, 분쟁의 사전 방지, 마케팅 홍보 전략에의 활용 등 다양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허청에서의 조사방법으로는 기업동향조사(Patent Manage Map), 기술정보조사(Patent Techno Map), 주제조사(Patent Claim Map)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외에도 번호 조회 조사, 심사 경과 조사, 등록원부 조사, 대응 특허 조사등의 조회 조사방법이 있다. 이들 정보의 체계적 활용은 재산권 보호의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기업 전략에의 반영

기업의 신지식재산권 보호 전략은 기업 경영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절대적인 사안이므로 이를 재인식하고, 전문성이 겸비된 인력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신지식재산권 분야의 정보를 하나의 경제적 가치로 인정하고 기업 스스로가 정보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표 4-1> 대응전략의 유형

전략의 유형	주요 내용
기술독점전략	① 주변특허전략(Blocking Patent) - 취득 권리에 대한 일종의 보호망 구축 전략 ② 연쇄적 특허취득전략 - 계속적으로 자사의 기술과 제품에 점차 개량이나 개선을 거듭해 권리기간이 종료되기전에 연쇄적으로 새로운 특허권을 획득하는 방법
기술공개전략	◦ 공개전략이란 특허공개나 크로스 라이선싱(Cross Licensing)의 전략 - 우위성 확립
노하우 전략	◦ 연구와 경험에 의한 독자적인 기술인 지적 재산을 소유권으로 출원하지 않고 사내 기밀로 해 내부화하려는 전략
기술네트워크 구축전략	◦ 지적재산권으로서 권리화된 가치가 있는 기술을 매개로 하여 기업 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전략.

자료 : 김봉진, “기업의 특허관리 필요성”, 한국특허정보원(<http://www.chosa.or.kr>)에서 발췌·수정

(3) 제도적 차원에서의 도입

① 특허 상호 실시 허락(Cross Licensing)²⁴⁾ 제도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발 업체에 대해 후발업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첨단 기술을 무기로 원천기술을 무력화시키는 크로스라이센스의 체결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국내 전자 및 반도체 업계는 해외 업체와의 ‘기술 특허 분쟁’을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삼성SDI는 일본 후지쯔와의 PDP 특허 분쟁의 해결 방법을 양사가 보유중인 특허 기술을 향후 5년간 상호 사용하기로 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결했다. 한국과 대만, 중국업체들의 기술력이 높아지면서 기존 미국이나 일본 업체들의 특허를 응용해 다른 특허기술을 개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유럽의 대기업간에서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 페턴트 백(일방적인 기술 도입)그룹의 결성에 의한 특허 독점이라는 목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24) 특허 상호 실시 허락(크로스 라이선스)제도는 특허를 가진 업체끼리 연합해 라이선스를 맺은 뒤 서로 가진 특허 및 로열티를 공유하고 신규 업체의 진출을 막는 방법을 통해 특허 소송에 대처한 방안이다.

(주: 단 크로스라이선스에 의한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원천특허에 대한 많은 개량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특허분쟁의 해결 방법을 위한 크로스라이선스를 위한 특허권의 확보가 선결 과제이다)

② 지적재산권 기술가치 평가제도

개별 기술가치 평가, 구체적인 평가유형의 개발, 관련된 기술평가제도 정착을 위한 활용방안의 제시, 개별 특허권의 가치평가 및 국내외 개별 특허권 기술가치 평가 등을 분석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세부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로써 특허권에 대한 기술 가치 평가는 금융기관의 자금 신청, 특허권을 담보로 하는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에 활용, 기술 개발 성과의 이전·판매와 수요자들이 구매하기 위한 기술평가가 현실화될 수 있다.

③ 글로벌 IP정책의 변화

선진 기업들이 특허 숨기기 혹은 잠수함 특허(patent ambush, submarine patent)전략을 사용하였으며, 제로 선진국들은 국가의 비상사태 혹은 공공의 비영리적 목적 등에 한하여 후진국의 강제 실시권을 엄중히 막고 있지만, 이에 굴복한 바이엘 사는 1.77달러의 약품가를 0.95달러로 인하하였다. 그리고 중국이 반독점 법안을 정비하여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후발개도국들 또한 WTO체제하에서 나름대로의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요즘 일본의 기업들은 중요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특허출원을 하지 않고 대규모 시스템의 블랙 박스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적 재산권 침해로 인해 선택한 전략이 기술의 블랙 박스화이다. 그리고, 크로스 라이선스를 통한 로열티 수입 축소를 피하기 위해 위장기업의 특허 공세라든지, 기술의 Convergence(수렴)화로 인한 특허 로열티의 증가도 있다²⁵⁾.

2) 단계적 추진 전략

전자상거래에서는 기업의 신지식 재산권 대응전략의 일환으로서 시나리오에 의한 단계별 접근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상품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환경적 요인과 전자상거래 과정, 그리고 문화적 배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해 나가는 일이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예로서 그 첫 단계는 사이버 공간과 네티즌을 이해하는 일로서 디지털 상품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 다음으로 기업의 경영환경이라 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과정의 특성을 분석하고, 장기적으로 기업자산의 안정적 보호차원에서 건전한 e-문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다.

2. 정책 방향

신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는 법·제도적 뒷받침을 전제로 하여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실체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이 어려운 환경으로 법과 정보통신기술의 접목과 접근의 교각이 형

25) 김영도, “기업경영의 특허전략에서 선행기술조사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12, pp.49-50

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법과 정책과 기술, 시장이 서로 타협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의 발전 방향이므로 정부의 정책적 방향으로 기업전략의 큰 흐름을 결정하게 되며, 최소화의 수준에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경제 주체인 기업 및 소비자와의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인한 신지식재산권 분쟁의 기회에 대비한 정책적 준비를 해 두어야 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정보 통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기술이 법적인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알기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신지식재산권의 문제는 정보 통신기술에 대한 법의 수동적인 수용이 아닌 적극적인 이해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론적인 논의가 아닌 실제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법학의 관점에서 각 국의 IT(Information Technology)관련 법제도를 중심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²⁶⁾.

V. 결론

신지식재산권 문제는 우리나라 IT산업을 비롯한 미래 기술 산업 전반의 발전을 좌우한다.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인 IT산업을 지목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라이프사이클’이 급격히 단축되면서 기업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기업들로 하여금 그 대응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연구 개발에 대한 기업의 의욕 저하, 첨단 기술 분야 개발에 대한 선점 지위의 상실, 클레임 증가 및 로열티 지급 등으로 인한 제품 판매의 제한, 채산성 악화 및 경쟁력 저하 등의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어 충분한 교육과 법률적 검토가 사전에 준비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공장과 기계 설비 등 설비투자는 꺼리는 반면, 특허권과 소프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는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본다.

기업경쟁력에서도 지적 재산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특허권·산업재산권·프랜차이즈·소프트웨어·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²⁷⁾

Ned Davis 연구소가 S&P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무형자산의 가치는 1975년 시장가치의 16.8%에서 2005년에는 79.3%까지 급속도로 성장하였다.²⁸⁾ 우리나라 10대 그룹 상장 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2004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0대 그룹 소속 상장사들의 무형자산 취득액은 4106억44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70억8600만원에 견주어 29.5 %나 늘었다. 설비투자를 줄이면서까지 무형자산 취득에만 주력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26) 이상정, 오승정,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진명인쇄공사, 2002. p.197.

27) 「한겨레신문」, 2004. 10. 19.

28) <http://www.icknowledgecenter.com/WhitePapers/OceanTomoS&P500.pdf> 재.인용.

훼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면에서 신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유의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인 동시에 디지털 상품 공급자로서의 네티즌인 프로슈머(producer + consumer)로부터 창출되는 e-문화정착은 신지식재산권 보호 차원을 초월하여 검토 되어야 하며, 향후 정보의 공유와 독점문제는 계속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많아 기업차원의 재산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특히 신지식재산권 분야인 비즈니스 모델(BM)특허 또는 바이오 기술 분야 등의 재산권 보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둘째, 무한복제가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는 ‘공유’를 ‘공짜’와 동일시 하는 디지털 상품의 재산권 보호 문제와 맞물려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사적 재산과 상품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재산권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속에서 기업의 경영전략이 수립·실행되어야 하므로, 현대의 기업들은 신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주체들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관점이 크게 변모하는 현상과 그 가치보전을 위한 대응방향을 점검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고, 디지털 상품 중심의 신지식재산권 보호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의 결과 인터넷 중심의 디지털 경제 시대에서는 신지식재산권 관련분야의 급격한 사이클 변화로 인하여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 및 정책적 대응이 매우 곤란하거나 예측불허의 상태에 있다는 애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전략 차원에서 신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체계적, 단계별로 수립하되,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 확충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는 분야이기에 후속 연구를 위한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參 考 文 獻

◇ 국내문헌

김광용,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 제시”, 진명인쇄공사, 2002.

김기현,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김병학,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활용방안”,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무역구

- 제」, 가을호 통권 제8호, 2002.
- 김병학·이상선, “지적재산권 국제 브랜드 전략”, 도서출판 두남, 2003.
- 김영도, “기업경영의 특허전략에서 선행기술조사정책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2005.12.
- 박성호,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의 저작과 지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석사학위 논문, 1997.
- 오상영, “전자상거래 경영기술 패러다임 분석을 통한 한국 전자상거래 주요 성공요인별 성숙기간 예측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오승중, “디지털 시대의 지적재산권 보호”, 「사이버스페이스 법제의 법이론적 특성과 체계정립」,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 윤복남, “도메인 네임 분쟁사례 : 국내사례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연구소(KIPRI), 2002.
- 이상정·오승중, 프로그램 심의조정위원회, “멀티미디어 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적재산권의 보호 방안 연구”, 진명인쇄공사, 2002.
- 이승영, “디지털 전환과 기업의 e-비즈니스 성공전략”,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서2002-367, 2003
- 이서원, “글로벌 지적재산권 정책의 진화에 주목하라”, LG주간 경제, 2006.5.
- 이원재, “봇물처럼 쏟아지는 ‘e-공짜’ 바로 읽기 : 공짜 소비자도 ‘사용대가’ 받아야”, i-Weekly, 2000. 8. 19.
- 전기억, “신기술 분야의 특허정책”, 특허청 발명정책과, 2002.
- 조동기·김병준·조희경, “사이버 문화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2.
- 최경수, “WIPO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해설”, 계간저작권 1997년 봄호, 여름호.
- 최준선,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 “각국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관련법규(조약, 협약) 번역 및 해설”, 진명인쇄공사, 2002.
- 황희철, “지적재산권에 관한 미국 ‘UR협정법’ 소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1995.
- 대외무역진흥공사, “국제화 시대의 지적재산권 분쟁과 대응방안”, 「무공자료90-71」, 1990.
- 지적재산권연구소,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해설”, 태웅문화사, 1997.
- 특허청, “지식경영을 위한 특허관리가이드북”, 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0088-01.
- 현대경제연구원, “오프라인 업체의 비즈니스 모델 변신 방향”, PBR(2001-04), 2001. 4.
- Darby, G. E., “Closing the Gap on Software Patentability : The Key to a New Conception of Property in the Cyberspace Era”, (사이버 시대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의 특허성 : 사이버 시대의 신소유권 개념), 「사이버 시대의 법적 환경」, 기술과 법 연구소, 1998.
- Hagberg, K. L., “An Introduction to Cyberspace Law”(사이버스페이스 법 개관), 「사이버 시대의 법적 환경」, 기술과 법 연구소, 1998.

http://www.ccourt.go.kr/precedent/month_list.asp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712030028>

<http://www.ecoin.co.kr>

<http://www.icknowledgecenter.com>
<http://www.ipleft.or.kr/data/ma12.htm>
<http://www.kipo.or.kr>
<http://www.netlaw.co.kr>
<http://www.wipo.org>

◇ 구미문헌

- Afuah, Allan, "Internet Business Models", MSU e-Trade Workshop, 2002. 7.
- Bettig, Ronald V., "Copyrighting Culture: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llectual Property", Colorado: Westview Press, 1996.
- Campbell, Dennis ed.,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aw, New Developments*, John Wiley & Sons, 1995.
- Chesher, Michael and Rukesh Kaura, *Electronic Commerce and Business Communications*, Springer, 1998.
- Irish, Vivi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Engineers", The Institution of Electrical Engineers, 1994.
- Litman, Jessica, *Digital CopyRight Second Edition, Volume 1*, Aspen law & Business, A Division of Aspen publication, Inc., Gaihersburg New York. 2001.
- Sterling, J. A. L., World L. L. B., *Copyright Law*, London Sweet & Maxwell, 1998.
- Committee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Emerging Information Infrastructure, National Research Council, *The Digital Dilemma: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Information Age*, 2000.
- WIPO Copyright Treaty adopted by the Diplomatic Conference on Dec. 20, 1996, WIPO Doc. Cmr/DC/94, Dec. 23, 1996.